

# 대학원학칙 행정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17. 03. 01. 제정  
2018. 03. 01. 일부개정  
2019. 03. 01. 일부개정  
2019. 04. 01. 일부개정  
2020. 03. 01. 일부개정  
2020. 09. 01. 일부개정  
2021. 03. 01.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행정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글로벌 역량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추고 공공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혁신, 성과관리, 전략기획, 정책분석·평가,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에 전문화된 공직엘리트 및 정부 컨설턴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① 정부 및 공공기관 관리자의 직무 전문성 제고와 경력발전을 위한 고등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② 국가정책 및 정부행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력과 응용력을 갖추고 공공 현안 해결에 특화된 역량을 지닌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한다.

③ 공공행정 및 정책 분야별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제4조(학위과정) 본 행정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둔다.

## 제 2 장 학적관리

### 제1절 입 학

제5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③ 지원자의 학위종류에 따라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6조(정원 외 입학)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된 자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한다.

-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제8조(지원 절차) 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자
  2.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
  3. 그 밖에 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자
-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제적된 날로부터 6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③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 한다.

## 제2절 휴학·복학·제적

제10조(휴학·복학) ①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박사는 4년(8학기), 석사는 3년(6학기)으로 한다.
-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 ⑤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제11조(자퇴)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5. 자퇴한 자

### 제3절 등록과 수강신청

제13조(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② 수료연구생은 매학기 수료연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제출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 ④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미수료자 등록금 감면) 석사과정 미 수료자로서 5학기 이상, 박사과정 미 수료자로서 7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교과학점 1~3학점을 수강 신청할 때 등록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학생은 소정 기일에 학비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 ①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4. 학생이 등록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

②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③ 학기 개시일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까지 제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④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⑤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휴학생의 등록금은 제4항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학교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학점 외에 각 과정별로 요구하는 연구지도 학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3학기 부터는 학기별로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초과학점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제18조(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폐강) ① 교과목 폐강기준은 수강인원 3명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나 개설 교과목이 수강학생의 수요 및 자격증 취득, 기타 과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개설할 수 있다.

### 제 3 장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 제1절 수업연한 및 학점인정

제20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은 각 호와 같이 행정학과와 정책학과를 둔다.  
1. 행정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인적자원 관리, 성과관리 및 평가, 지방행정, 공공서비스 혁신, 협력적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 등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 정책학과는 공공정책의 분석, 설계, 집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야별 정책의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과별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  
③ 수업은 정규수업(주·야간)과 주말수업으로 구분하며, 강의, 세미나, 현장실습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제21조(수업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로 한다.  
②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3년(6학기)로 한다.

제22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으로 하며, 재학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은 이 세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다.

제23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학점 이수조건

과정	구분	이수조건	총 이수학점
석사과정	전공필수	6학점	2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연구지도	4학점	

2. 박사과정 학점 이수조건

과정	구분	이수조건	총 이수학점
박사과정	전공필수	12학점	42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연구지도	6학점	

② 석·박사과정의 매학기 전공학점 취득은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매학기 1학점씩 취득해야 하는 연구지도 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학점인정)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전공 관련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취득과목 인정은 본 대학원의 유사과목에 한 한다.

②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타학과 개설과목 교차 수강이 가능하며,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군 교육기관 및 재학기간 중 교류협정에 의한 국·내외 타대학교나 연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절 지도교수 및 종합시험

제25조(지도교수 신청) ①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1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학기 초부터 논문작성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행정전문대학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26조(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27조(종합시험 과목 및 방법)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전공필수 2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

한 1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4과목으로 하며, 각 학과별 필수 3과목(전공필수 2과목, 공통 필수 1과목) 및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B학점)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B학점)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29조(종합시험 배점)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의 점수배점은 전공필수(2과목)는 각 과목별 30점,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40점으로 하며, 합격점수는 70점(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점수배점은 필수(3과목)는 각 과목별 20점,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40점으로 하며, 합격점수는 70점(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각 과목별 70%이하는 과락으로 한다.

제3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31조(종합시험 재응시) 석사와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 가능횟수는 총 3회로 제한한다.

### 제3절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32조(학위청구 자격) 시행세칙 제23조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는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2회에 한하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② 군복무(의무복무), 임신, 출산, 육아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단,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타지역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시국 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특례신청을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논문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

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자는 기 위촉지도교수가 퇴임 또는 유고시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제출 승인서를 지도교수로부터 승인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 4월 말, 후기 10월말까지로 한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한문 혼용(원어 포함)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심사 위원회)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최소 1인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 하며,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논문심사 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 논문심사의 최종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박사과정 논문심사의 최종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5인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8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수여조건 및 학위는 각 호와 같다.

1. 행정학석사(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 행정학과 소속으로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행정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 정책학석사(Master of Public Policy): 정책학과 소속으로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정책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박사학위의 수여조건 및 학위는 각 호와 같다.

1. 행정학과 학술박사(Ph.D.)와 전문박사(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 행정학과 소속으로 박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2. 정책학과 학술박사(Ph.D.)와 전문박사(Doctor of Public Policy) : 정책학과 소속으로 박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정책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④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

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 학위를 취소한다.

#### 제4절 수료연구생

제40조(수료연구생 및 수료생) ①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② 수료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제41조(등록) 수료연구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시기는 학교의 소정 등록금 납입기간으로 한다.

제42조(영구수료)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재학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되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43조(수료연구생의 권리) ①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 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③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소정의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절 장학금

제44조(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과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B+(3.5)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 4 장 위원회의 운영

제46조(행정전문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외에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4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8조(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 그 밖의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의 편성,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 시행세칙 및 규정의 제정과 폐기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0조(전임교원회의) ① 전임교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대학원입학 및 관리운영) 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5장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른다.

제52조(준용)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제10조 제4항 개정, 제17조-제19조 신설, 제23조 제2항 개정, 제24조 개정, 제32조 개정, 제33조 제2항 신설, 제38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51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2조 개정, 제15조 개정, 제24조 개정, 제25조 개정, 제27조 개정, 제29조 개정, 제31조 개정, 제38조 개정, 제44조 개정, 제19조 신설, 제50조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개정, 제16조 개정, 제51조 신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4조제4항 개정, 제15조 개정, 제21조제1항 개정, 제21조제3항 삭제, 제22조 개정, 제23조 개정, 제23조제3항 삭제, 제25조 개정, 제28조제1항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7조제2항 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개정, 제23조제2항 개정, 제24조제2항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의 제17조, 제23조는 2020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제10조제5항 신설, 제22조제1항 개정, 제22조제2항 신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3조제3항 신설)
2. (경과조치) 제10조(휴학·복학), 제22조(재학연한),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는 2017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